

2024년도 제2차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란

-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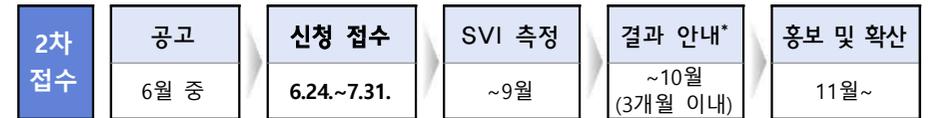
-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400개소 내외

*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전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측정 기업 수 조정

□ 절차 및 일정



* 측정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보(접수 마감일 아님)

** 1·2차 측정 결과 ‘미흡’ 등급 기업은 3차 접수 시 예산 범위 내 재측정 신청 가능

*** 3차 접수: 9월 초~9월 말, 300개소 내외 접수 (예정)

【 전년 대비 2024년도 주요 변경사항 】

- (측정규모) 연 1,500개 내외 → 연 1,000개 내외
- (접수기간) 7개월 상시접수 → 3회차 접수(접수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참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중심*
 - * 2·3차 접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상 확대
- (자가진단 신설)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내 계량지표 중심 자가진단 기능 신설, 모의측정 접수 사전 확인 가능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 및 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

2 세부절차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4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 [참고] '하반기 교육일정' 참조(p.11)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
- * [붙임3] 증빙자료 예시, [붙임4] 「2024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매뉴얼」 참고
- 신청 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신설
-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접수 사전 확인 가능
-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 및 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 [붙임2] 「SVI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가이드(기업용)」 참고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사전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 사전검토 담당하는 용역기관에서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 4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90점), 보통(60점~75점) 미흡(60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통보(예정)
- * 증빙서류 등 추가 확인 및 인터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확정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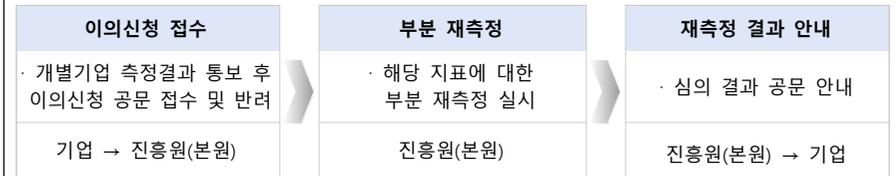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접수대상)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 오류 등으로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접수방법) 이의신청서(서식2) 작성 후 SVI 전용메일(svi@ikosea.or.kr)로 공문 제출
- (접수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접수 및 부분 재측정 안내

◇ 이의신청 반려사유

- ① 정량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 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
- * 상세내용: 본 공고문 p.5~7 내용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 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차 접수) 2024.6.24.(월) 09:00 ~ 2024.7.31.(수) 18:00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작성·제출
 - *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절차 등은 【붙임2】 '신청가이드' 참조
- (증빙서류) 기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양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제출
 - * 필요시 【붙임3】 '증빙자료 예시' 참조
- '【서식】 개인정보동의서'(p.12)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모두 한 장씩 날인 후 지표 10번 '고용성과'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 '24.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며, 연계된 수치는 수정 가능
 - ※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최종 접수 인정
 - * 시스템 이용 등 상세내용: 【붙임2】 'SVI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가이드(기업용)' 참조

4 SVI 활용 현황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재정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연계

〈정부·지자체 SVI 연계사업 현황〉

주체	주요사업(요약)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애로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장 2년·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우수기업은 미래유망기업 유형으로 신청 가능
서울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판로 개척 지원사업 등에 SVI 탁월·우수·참여기업 심사 가점 및 컨설팅 활용 · (미래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업종별 기업과 구직자 매칭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금천구 사회적경제 Re-스타트 프로젝트) 금천구 정책의제(돌봄·환경·교육) 관련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시 진흥원 온라인 SM 교육 수료를 자격 요건으로 활용 · (교육 및 컨설팅) 기초자치단체 단위 SVI 교육 및 측정 컨설팅 추진
인천	· (LH 임대주택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무상 임대 시 SVI를 심사 가점으로 활용(예정)
강원	· (사회적기업 고도화) 예비사회적기업의 SVI 모의 측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광주	· (재정지원) 재정지원 참여기업 선정 심사 시 SVI 일부 지표 적용
전북	· (용자지원) 자치단체 용자지원 대상기업 선정심사 시 SVI 일부 지표 활용 ·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선정심사 시 SVI 일부지표 활용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SVI 교육수료 및 SVI 측정참여기업 대상 우선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고도화) SVI 멘토링을 통해 SVI 측정결과 피드백 제공 등
제주	· (용자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통해 용자지원 시 선정 심사에서 SM 측정기업 가점 부여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심사 및 참여 조건으로 SVI 활용 · ((예비)SE 자립 기반 조성)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 사업비 지원 시 참여 조건으로 SVI 활용
충남	·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선정심사 시 일부 SM 지표 활용 및 우수등급 이상 기업 가점 부여 · (시설비)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시 SVI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판로지원) 홍보물 제작·특판전 등 판로지원 진행 시 SM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컨설팅) 사회적경제 진입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시 SVI 활용
대구	·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 시 '22~'23 SVI 측정 참여기업 대상 심사 가점 등 제공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시 '23 측정 참여기업 심사 가점 및 '24년 측정 참여 조건으로 활용
경북	· (사회적 가치 우수유망기업 성장지원사업) SM 우수 이상 사회적기업 대상 수익모델 개발 지원 · (자원연계 전문 플랫폼 지원) 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자원연계 시 신청 요건으로 SM 활용 · (홍보 및 컨설팅) SVI 컨설팅 지원, 설명회, 우수기업 상패 수여 등
경남	· (시설장비비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시 SVI 우수기업 이상 우선 선정 · (컨설팅 및 홍보)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컨설팅, SVI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 등

※ 사업 주관기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내용 등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세부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5】 자료 참조

□ **진흥원 사업연계**

-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진흥원 SVI 연계사업 현황>

지원사업명	활용 내용	담당부서
소셜벤처 운영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기업 우대(6월) * (소셜벤처 운영) 소셜벤처(Social Vendor)를 통한 진단, 온라인 판로 교육, 상품개선,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지원까지 원스톱 판로지원	판로지원팀
e-store36.5 (사회적경제 상품물)	· SVI 전용관 신설하여 SVI 우수·탁월기업 상품 홍보(6월 중) 	
유통채널 진출지원	· SVI 탁월기업 대상 상품 홍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5~10월 중) ·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추천기업 선정심사 시 탁월·우수기업은 사회적가치 부분 최고점 부여(4월)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입주 연장 심사 시 SVI 측정기업 가점 부여(현행)	성장지원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 추진기업 선정시 SVI 참여기업 대상 가점 2점 부여(현행) · SVI 우수·탁월기업 컨설팅 자부담률 50% 인하(4월~)	
사회적금융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대상선정위원회 심사 기준 수립 시 SVI 지표 활용(예정, 하반기)	

□ **민간 지원사업 연계**

-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활용유형	기관명(지원사업)	활용사항
재정지원	KDB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인프라 확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 SVI 측정기업 우대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 SVI측정 결과 탁월 우수기업을 금융지원 시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성과와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탁월·우수기업 추천
- 진흥원 공식 블로그, 매거진 등을 통한 홍보 지원
-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최우수 기업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종 선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우수’ 등급 이상 가점 부여

□ **기타**

- 2026년부터(2025년 실적분 평가) SVI 평가에서 ‘미흡’을 받거나 평가에 미참여한 기업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미포함 예정*
- 아울러, 2025년부터(2024년 실적분 평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 ‘우수’ 또는 ‘탁월’ 평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은 명단을 공표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할 계획
- *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4.1.)

5 문의처

□ SVI 측정·교육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센터(1551-2024)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 (서울·인천·경기·강원) 협동조합 소셜랩(02-2637-1126)
- (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대전·충남·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
-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053-254-8397)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 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참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기업명		기업 연락처	
			전자메일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제기 대상 지표 및 측정 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귀사는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